

파주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

[시행 2024.04.02]
(제정) 2024.04.02 조례 제2075호

관리책임부서명 : 노인장애인과
관리책임전화번호 : 031-940-8416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파주시에 거주하는 뇌병변장애인의 자립지원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뇌병변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권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뇌병변장애인"이란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 1 제2호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.
2. "보조기기"란 장애인등의 신체적·정신적 기능을 향상·보완하고 일상 활동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기계·기구·장비로서 「장애인·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2조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.
3. "보장구(保障具)"란 장애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하는 기능을 보완하여 장애인의 이동 및 활동을 도와주는 기구를 말한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파주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뇌병변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, 관계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뇌병변장애인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5조(지원계획 수립) ① 시장은 뇌병변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파주시 뇌병변장애인 지원계획(이하 "지원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해야 한다.

1. 목표 및 기본 방향
2. 뇌병변장애인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
3. 뇌병변장애인 관련 비영리 법인·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
4. 뇌병변장애인과 그 가족(보호자를 포함한다)에 대한 상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
5.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
6. 채용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
7. 그 밖에 뇌병변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

②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뇌병변장애인 실태조사 및 욕구조사를 실시하고, 그 결과를 지원계획에 반영해야 한다. 다만, 실태조사의 조사항목은 성별을 구분하여 작성한다.

제6조(지원사업) ① 시장은 뇌병변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재활치료 및 심리상담 지원
2. 자립생활 및 직업연계 지원
3. 평생교육 지원
4. 문화·예술·여가·체육활동 지원
5. 가족의 휴식 지원
6. 맞춤형 보조기기 및 보장구(保障具) 지원
7. 대소변흡수용품 지원
8. 활동지원인력 지원

9. 생애주기별 운동치료 등 건강 증진 지원

10. 주간활동서비스 지원

11. 의료비 지원

12. 이동서비스 이용 지원

13. 주택개조 및 주택알선 지원

14. 그 밖에 시장이 뇌병변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 및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제7조(재정지원)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8조(협력체계 구축) 시장은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뇌병변장애인 관련 비영리 법인·단체 및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제9조(홍보) 시장은 파주시민을 대상으로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하여 파주시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.

제10조(준용)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부칙(2024. 4. 2. 조례 제2075호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